

2026 제2차 경기도체육육성지원 사업 공고

- ◆ 다양한 유형의 체육육성을 위한 개소별 맞춤형 지원 및 참여자 만족도 제고
- ◆ 경기도민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통한 체육 저변확대 및 체력 증진 도모

1 공고사항

□ 공 고 명: 2026 경기도체육육성지원 사업

□ 추진일정

○ 공고기간: 2026. 5. 20.(수) ~ 6. 5.(금) / 17일간

○ 제출기간: **2026. 5. 29.(금) 09:00 ~ 6. 5.(금) 18:00까지 / 8일간**

○ 제출방법: **공문 제출**《전자문서 또는 이메일 중 택1》(※ 방문접수 불가)

담당자	이메일	문의전화
서민영 대리	0021@ggsc.or.kr	☎031-250-0452

※ 접수 관련 문의, 평일 업무시간 내(9시~18시, 점심시간 제외(12~13시))에만 가능

※ 사업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접수여부 확인 요망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마감일 18:00 내에 지정된 전자문서 및 이메일 주소로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, 미도달 또는 지연 도착 시 접수 불가

※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 시 심의 제외

○ 제출서류

《공통서류》

- ① 공문 ② 사업신청서 ③ 사업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⑤ 공모참가 서약서 ⑥ 금액변동 확인서

《유형2 추가서류》

- ⑦ 단체소개서 ⑧ 동일(유사) 사업 수행실적표

※ 제출자료 관련서식: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

※ 시·군·구·종목단체 주관 대회(도·전국·국제) 신청 시, 경기도종목단체 동의서 반드시 첨부

※ 체육활동 법인·단체: '정관' 반드시 첨부

○ 결과발표: **2026년 6월 중** (선정단체만 개별통보)

2

주요사항

- 사업기간: 2026년 7월 ~ 12월
- 사업장소: 사업유형별·지역별 적정장소 선정
- 신청자격

유형1 (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사업)	유형2 (체육대회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6호 가,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 ① 경기도종목단체 ② 시·군체육회 ③ *체육활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6호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 ① 경기도종목단체 ② 시·군종목단체 ③ *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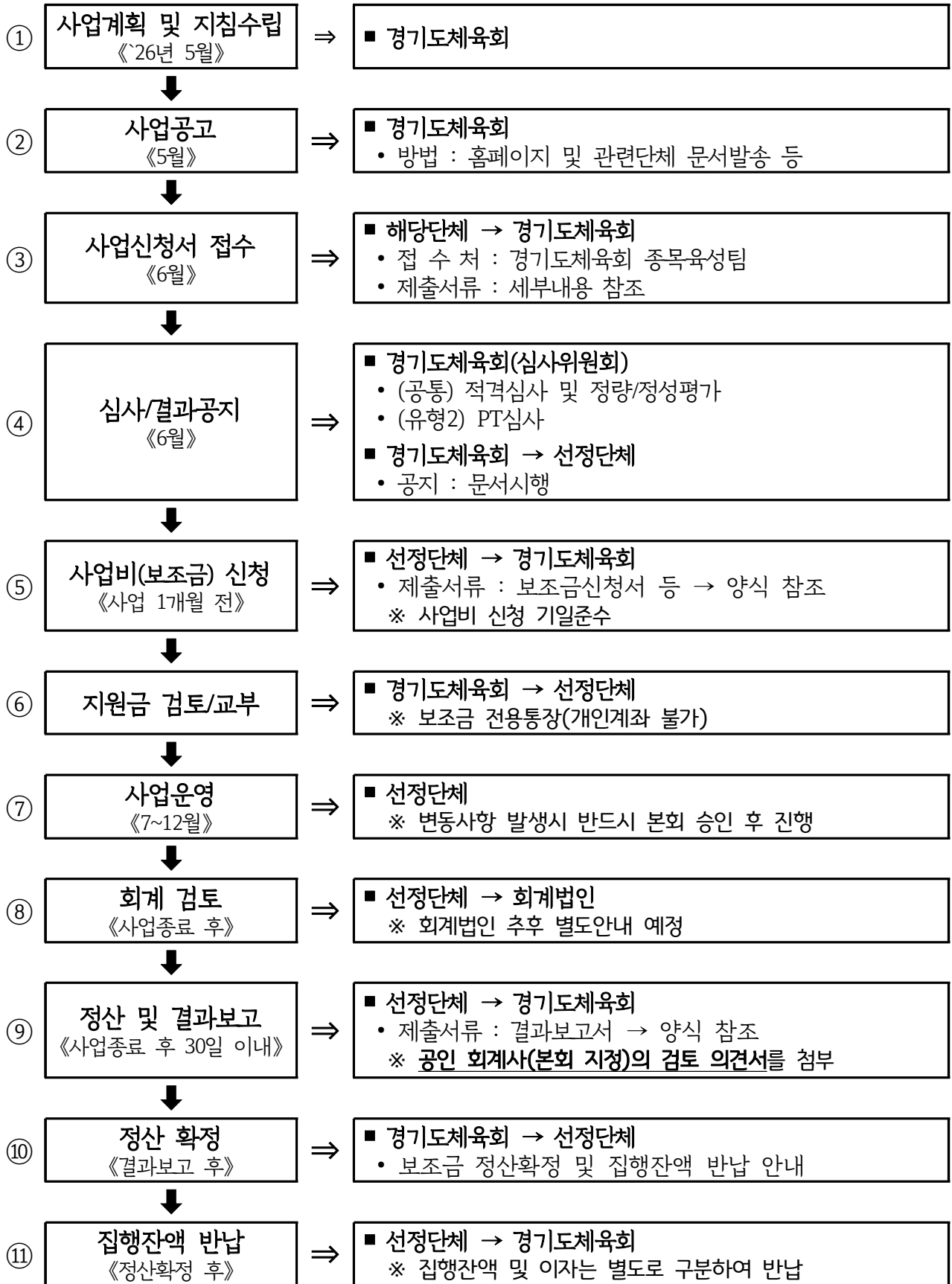
- ※ 동일 사업으로 유형1, 유형2 **공모 중복 신청불가**
- ※ **(유형1) 시·군종목단체 신청 방법:** 시·군체육회 또는 경기도종목단체 접수(직접 신청 불가)
- ※ 읍면동체육회는 시·군체육회를 통해서만 신청
- ※ 장애인 체육단체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로 참가 문의
- ※ **시·군종목단체 주관 대회(도·전국·국제) 신청 시, 경기도종목단체 동의서 반드시 첨부**
- ※ ③ 체육활동 법인·단체: '정관' 반드시 첨부

- 사업내용: 다양한 체육활동 사업 등에 대한 공모·심사를 통한 사업비 지원
- 선정방식: 유형별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가 선정
- 지원규모: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(단체별 신청금액 대비 60~100% 지원)
- 지원방법: 선정단체 보조금 전용계좌(법인통장)에 입금[개인계좌 입금 불가]
- 재정지원: 경기도

구분	유형① (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 사업)	유형② (체육대회 지원사업)
공모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6호가,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 1) 경기도종목단체 2) 시·군체육회 3) 체육활동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제2조(정의)6호가, 나, 다에 해당하는 단체 1) 경기도종목단체 2) 시·군종목단체 3)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(경기도 소재)
지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전문체육 육성지원 ②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③ 배려계층 체육용품지원(10개소 이내) ④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 ⑤ 외국인주민 체육 프로그램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수혜자: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▶ 사업내용: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사업 (대회, 강습 체육행사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도단위 체육행사 ② 전국단위 체육행사 ③ 국제단위 체육행사
지원 규모	①~⑤ 사업별 30,000천원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회당 50,000천원 이내 ② 대회당 100,000천원 이내 ③ 대회당 150,000천원 이내
공모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 사업, 1개 유형으로 신청 • 단체별 공모신청은 3건 이내로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 사업, 1개 유형으로 신청 • 단체별 공모신청은 1건으로 제한
제한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회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• 보조금 횡령, 유용, 장계 등 중대한 위반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법인 또는 단체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• 신청서 제출 법인(단체)과 실제 운영 법인(단체)이 다를 경우 선정 심사 제외 • 학술 및 연구사업, 임·직원 대상 강습 및 체육대회, 체육시설 관련사업 • 사업대상이 장애인에 국한한 사업 • 자체 스포츠클럽, 지역친목행사, 홍보캠페인 관련사업 	

4

추진절차(안)



※ 사업 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
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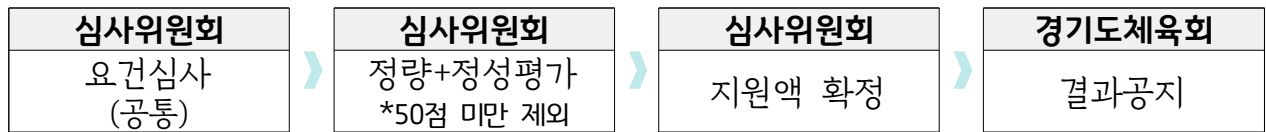
□ 심사위원 구성: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

□ 심사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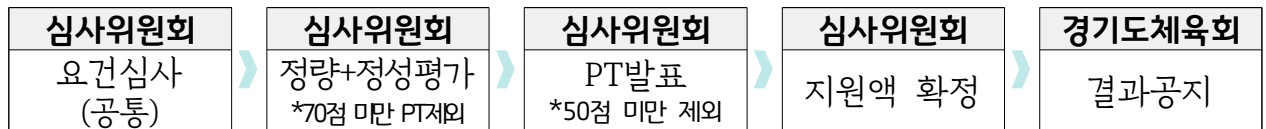
- 도내 소재지 신청단체를 우선으로 각 위원회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
- 사업대상은 경기도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

□ 심사절차

○ 유형1



○ 유형2



□ 심사방법

▶ (공통) 요건심사

-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완비 여부를 심사위원회 적격 여부 판단

▶ (공통) 정량·정성평가

- 정량평가: 사업 수행을 위한 정량적 자원 투입 계획의 적절성 평가
- 정성평가: 사업의 추진 당위성과 운영의 안정성 및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적 실행 역량 평가

▶ (유형2) PT심사(정성평가)

- 사업의 전략적 타당성 및 지속 가능성과 운영 주체의 핵심 수행 역량에 대한 종합 평가

□ 결과공지

- 발표일정: 심사종료 후 10일 이내
- 발표방법: 선정단체 공문 또는 문자발송
-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서 별도 배포 예정

6

신청 서류 작성

□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

- '사업계획서 작성 예시'를 참고하여 유형별 사업개요 및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
- 선수명단, 대회 모집요강 등의 사항은 별첨 가능하며, 자유 양식으로 제출
- 「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」 및 「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6조의2」에 의거, 본 사업 선정단체는 행사 규모와 관계없이 '안전관리계획'을 수립하여 사업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함
 - ※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: 용품지원 등
 - ※ 기상 악화(혹서기·혹한기 등) 또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연기·중지·취소 통보할 수 있음
- 담당자의 연락처는 항시 연락이 가능한 사업 담당 실무자 연락처 기재
- 사업 접수 후, 신청한 사업유형과 사업내용은 변경 불가능
 - ☞ (예시) 유형1 → 유형2 / 유형1-① → 유형1-③
- 사업 홍보 및 자부담 확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

□ 예산편성 유의사항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준수
- 보조금 교부에 따른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등에 위배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항목 지원 불가

- ▶ 선거일 전 일정 기간(90일 등) 내에 지자체장 명의의 행사 개최나 후원 명의 사용금지
예시) [후원 - 경기도] 사용금지
- ▶ 보조금을 활용하여 상장과 함께 부상(상품권, 현금, 물품 등)을 수여하는 행위
- ▶ 특정 정치인(지자체장, 의원 등)의 이름이나 사진을 포함한 홍보물(현수막, 리플렛) 제작 금지
- ▶ 행사 취지와 무관한 과도한 경품 추첨 및 배부 금지

- 사업 선정 후, 편성 불가 혹은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본회와 협의
-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
-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체비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
- 자체비 예산은 실제 집행가능 금액으로 편성하고, 정산 시 증빙자료 제출
- 1개 비용항목을 보조금과 자체비로 일정부분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금지
-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, 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
 - ⇒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 불가

○ 편성불가: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

- ▶ 단체운영 경비: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비, 공과금 등
- ▶ 자본적 경비: 시설비, 시설부대비, 설비비, 수선비, 자산취득비 등
- ▶ 현금성 경비: 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등
- ▶ 차량 유지관리비: 수리비, 보험료, 유류비 등
- ▶ 기념품(참가자 전원 수령 포함), 시상금(시상품 포함), 임원피복비, 대회출전비, 국제대회 참가자, 관계자의 항공료 등, 상품권, 주류, 도서구입, 개인경비(주유)

- 유형1 전문체육 육성지원(①)의 경우 지원대상 증빙자료 필수(선수등록증 등)
- 유형1 프로그램(②), 행사(④)의 경우 체육용품은 선정액의 40% 이내 편성
- 유형2 공고료 및 광고료는 선정액의 15% 이내 편성
- ‘경기도, 경기도체육회 재정지원’ 의무 표기 (각종 인쇄물, 홍보물 등)

□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

사 업 유 형		참 고 사 항
전문체육 육성지원	용품지원	대상모집, 선정기준, 선수명단/입상현황(창단일 포함), 지원방안, 활용계획, 홍보 등
	전지훈련	지도자연락처, 선수명단/입상현황(창단일 포함), 일자별(시간별) 계획 등
	지도자 교육	참가자 현황, 일자/시간별 계획, 강사프로필, 교육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	교실운영	운영방법(시간,장소,지도횟수,참여인원,용품내역), 지도자 등 운영인력 현황, 참가자 모집, 프로그램 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	강습회	참가자 현황, 일자/시간별 계획, 강사 프로필, 교육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배려계층 용품지원	용품지원	대상모집, 선정기준, 배려계층 현황, 지원방안, 물품관리/활용계획, 홍보 등
	체육관련 행사	대회종별(세부종별), 행사일정 / 개·폐회식순, 시상계획, 참가자 모집, 용품현황, 대회규정(종별,참가자격,경기방법,기타), 운영인력 현황(심판,진행 등), 준비사항, 안전대책, 홍보 등
외국인주민 체육프로그램 지원	각종대회	인력 현황(심판,진행 등), 준비사항, 안전대책, 홍보 등
	교실운영	운영방법(시간, 장소, 지도횟수, 참여인원, 용품내역), 지도자 등 운영인력 현황, 참가자 모집, 프로그램 내용, 안전대책, 홍보 등
	강습회	안전대책, 홍보 등
체육대회, 관련행사	체육대회, 관련행사	대회·행사 종별(세부종별) 일정 개·폐회식순, 시상계획, 참가자모집, 용품현황, 대회규정(종별,참가자격,경기방법,기타), 운영인력 현황(심판,진행 등), 준비사항, 안전대책, 홍보 등

※ 사업유형별 목적, 필요성, 기대효과를 명확히 기재

※ 세부추진 계획은 해당 사업유형별로 참고사항 외 기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

□ 예산편성 기준 ※ 사업계획서 '비목별 산출내역' 수립시 단가 등 적용

비 목	예 산 편 성 기 준	
	세 목	산 정 기 준
운영비	□ 일반수용비	
	○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	· 공통사항 ① 동일인 월 125,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(기타소득 8.8%) ②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또는 4~5회 이상 반복적·정기적 수행(사업소득 3.3%)
	- 심판비	· 종목단체별 규정 적용 지급 ① 체육단체 자체 규정 없을 시 중앙경기 단체 규정 적용 ② 심판자격증 제출 필수
	- 강사비	· 1인 1일 120,000원 이내 편성 ①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② 강사비 자체 규정 있을 시 본회 협의 必 ③ 출석부 및 수업일지(사진포함) 제출 필수
	- 운영요원	· 1인 1일 80,000원 이내 편성 ① 동일인 월125,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(기타소득 8.8%) ② 자격증이 없거나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단순 보조 인력 ③ 자격증 소지로 운영요원 인건비 상향 불가
	○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	· 단가 시장시세 적용 ※ 경기도 재정지원 문구 의무 표기 예시) 현수막 등 행사 안내 및 홍보물품, 명패, 상패 등
	○ 인쇄비 및 유인비	· 단가 시장시세 적용 예시) 책자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
	○ 소모성 물품 구입비	· 단가 시장시세 적용(취득단가 50만원 미만 물품) 예시1) 훈련, 지원사업에 필요한 체육용품 ※ 유형 1-①) 개인 훈련용품 지급 시 선수등록증 및 서명지 제출 필수 예시2) 경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(사무용품) 예시3) 단체복(행사 홍보 및 단발성 소모 목적)은 개당 50,000원 이내 편성
	○ 공고료 및 광고료	· 단가 시장시세 적용 ※ 유형2 광고비용은 선정금액의 15% 이내 편성 예시)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(TV·신문·잡지, 인터넷 광고 등)
	○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	※ 구급차 및 의료인력 필수 배치(구급용역)

비 목	예 산 편 성 기 준	
	세 목	산 정 기 준
운영비	□ 기타운영비	
	○ 의료비	· 단가 시장시세 적용 예시) 의약품 구매
	○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	· 음료 및 간식: 총 300,000원 이내 편성 가능
	□ 임차료	· 임차비 실비 적용임차계약서 내 사용기간 명시 예시)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, 시설, 장비, 물품, 버스 등
	○ 장소,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	· 공공기관 시설(체육관, 회의실, 경기장 등)을 최대한 활용
	○ 버스 등의 차량 임차료	·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단체 이동(훈련, 강습 등) 목적에 한함 예시) 강습회 및 대회참여자 참여자 버스 임차 등 ※유의사항: 일반 승용차, 단기 렌터카 임차 등 금지
	○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	· 예시) 행사용 음향·조명 장비, 대형 복사기, 천막·의자 세트 등
	□ 일반용역비	①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② 업체 선정 시, 공개입찰을 통한 진행이 원칙이나, 2천만원 (세금별도) 이하 금액은 1인 수의계약 가능 ③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등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(세금별도)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 ④ 주최/주관 단체가 법적의무를 다해야하는 사항 용역집행 불가 (선정단체 직접집행 원칙) 예시) 구급용역, 보험비, 심판비, 강사비, 운영요원, 여비 등
□ 공공요금 및 제세		
○ 보험비	※ <u>보험가입 필수(스포츠안전재단 보험 가입 권장)</u>	
여비	□ 국내여비	① 숙박: 1인 1박 70,000원 이내 실비적용 ② 식비: 1식 8,000원 / 1일 25,000원 - 주류비 지출 불가 - 유형 1-② 캠프, 강습회 한하여 참가자 식비 편성 가능
	□ 국외여비	·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 항목 지급 ※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에 의하여 지급

※ 세부사항: 추후 배부되는 사업설명서 참조